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주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2. 12. 14.

발의자 : 박주연, 임춘구, 권기만, 김성현,
강승수, 박세진, 손홍섭, 윤영철,
정하영, 허 복, 황경환, 김재상,
이명희, 김상조, 김수민, 김정곤,
김정미,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윤종호, 이수태(22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2.10.29.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3년도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858,000원”을 “1,970,000원”으로 조정(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례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 매월 “1,858,000원”을 “1,97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은 매월 <u>1,858,000원</u> 을 지급한다. ② (생략)	제3조(월정수당지급) ①----- ----- ----- <u>1,970,000원</u> -----. ②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조례안 발의 (제출) 의원
서명 날인부

성명	서명 (날인)	비고
임 호구	임 호구	
손 홍규	손 홍규	
김 성현	김 성현	1.
박 주원	박 주원	
유 명철	유 명철	
정 하영	정 하영	
권 리관	권 리관	
강 응수	강 응수	
허 복	허 복	
백 씨진	백 씨진	

조례안 발의 (제출) 의원
서명 날인부

성명	서명 (날인)	비고
김재성	김재성	
이수현	이수현	
김정아	김정아	
김정근	김정근	
김준남	김준남	
이병리	이병리	
김상조	김상조	
김수민	김수민	
유영재	유영재	
김민재	김민재	
김경환	김경환	